

일본의 통신시장 및 규제 현황

연 구 원 박 민 정*

연 구 원 여 혁 중**

일본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자국내 개방의지에 따라 통신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였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장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한-일 FTA 협상을 준비하고 향후 한-일간 통신 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를 대비하여 일본의 통신시장과 규제현황을 고찰하여 일본 통신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 차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일본의 통신시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서비스 시장 개관 2. 유선통신 시장 3. 무선통신 시장 4. 인터넷 시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II. 일본의 통신규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신규제기관 및 법규현황 2. 시장진입규제 3. 기타 주요 규제정책 IV. 결 론 |
|----------------------------------------------------------------------------------------------------------------------------------------------------------------------------------------------------------------------------------------|---------------------------------------------------------------------------------------------------------------------------------------------------------------------------------------------------------------------------|

I. 서 론

지난 2월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4년에 중단되었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재개가 추진되어, 6월 25일에 한-일 FTA 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이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본 실무협약을 통하여 양국 대표는 한-일 FTA의 원칙과 효과, 협상재개 환경 조성 및 재개 방안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며, 협상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독도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협상재개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양국은 20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에서 2003년 중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중 종료할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

연락처: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02) 570 - 4345, mjpark@kisdi.re.kr

** 정보통신협력연구실 (02) 570 - 4181, hyukjong@kisdi.re.kr

- 일 FTA 협상은 상품무역에서의 관세,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그리고 무역투자협력, 중소기업협력, 과학기술협력 등의 경제협력사업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진행되어 양국간 교역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하여 양측은 2003년 12월부터 6차례 FTA 협상을 벌였지만 일본 측이 농수산물시장 개방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2004년 협상이 중단됐다.

일본이 시장진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포함하여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것에 대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하고, 독도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FTA 협상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한-일간 통신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를 추진하고 통신서비스 통상협상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통신서비스 분야 규제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통신시장 및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통신시장 현황

1. 통신서비스 시장 개관

2002년 이후 일본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인터넷시장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선통신시장의 지속적인 하락 및 무선통신시장의 성장둔화로 인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일본의 통신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2% 상승한 1,180억 달러이다. 2005년부터 2006년간 유선통신 가입자는 약 2% 하락하였고, 무선통신 가입자는 5.3% 증가하였다. 인터넷 시장은 2006년 15%, 2007년 상반기 6%의 성장을 보이며, 2007년 기준 총 2천7백만 명이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표 1> 일본 통신서비스 시장 개관

| | |
|----------------------|----------------------------|
| 인구(2006년) | 1억2천7백만명 |
| GDP(2006년) | 43,660억 달러 |
| 1인당 GDP(2006년) | 34,296 달러 |
| 규제기관 | 총무성(MIC) |
| 주요 통신 사업자 | NTT, KDDI, Softbank Mobile |
| 유선통신 보급률(2006년) | 50.0%(6천6백만 회선) |
| 무선통신 보급률(2007년 6월) | 77.0%(9천8백만 가입자) |
| 초고속인터넷 보급률(2007년 6월) | 21.0%(2천7백만 가입자) |

자료: IDATE(2007)

NTT는 여전히 세계 최대의 통신사업자 중 하나이나,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시장에서 첨예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Softbank는 인터넷 시장에서 꾸준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으며, 2006년 Vodafone KK를 인수하여 무선통신 시장에까지 진출하였다. 무선통신시장의 성장둔화는 서비스가격의 하락과 신규사업자 진입에 의한 경쟁에 인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인터넷 시장은 Triple Play와 VoIP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DSL에서 Fibre Network로 재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표 2〉 통신서비스 시장 매출액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유선통신 | 35.8 | 33.8 | 32.9 | 31.7 | 30.7 |
| 무선통신 | 62.2 | 61.5 | 61.1 | 62.2 | 62.7 |
| 데이터전송 | 12.2 | 12.9 | 13.9 | 15.6 | 16.3 |
| 인터넷 | 5.7 | 7.0 | 8.1 | 9.0 | 9.5 |
| 총액 | 115.9 | 115.2 | 116.0 | 118.6 | 119.1 |
| 연간 변화율 | 2.1% | -0.6% | 0.7% | 2.2% | 0.5% |

자료: IDATE(2007)

2. 유선통신 시장

2006년 기준 일본의 유선통신 시장은 전년대비 3.6% 하락한 3백2십억 달러를 나타내며 지속적인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유선통신 회선수(2006년 기준)는 6천6백만으로 집계되었으며, KDDI와 Softbank가 NTT의 지배적 위치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1985년에 유선통신 시장을 민영화하였으나, NTT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배적 리더십을 보유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브로드밴드의 확산과 더불어 인터넷전화의 보급이 확산되며 NTT는 동 부문에서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업체 간 치열한 가격경쟁과 인터넷전화의 등장으로 인하여, 유선통신업체의 가입자당 평균매출액(ARPU)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 말, 5백만 명이던 인터넷전화의 가입자 수는 2007년 3월말 현재, 1천5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Softbank가 자회사인 Yahoo! BB를 통해 VoIP 시장을 확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며, 동 분야에서 가장 큰 사업자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NTT도 VoIP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그 결과 2006년 말 현재 시장의 40% 정도를 점유하게 되었다.

〈표 3〉 유선통신 회선수 추이

(단위: 천)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
| 총 회선수 | 70,658 | 69,591 | 67,381 | 66,300 | 66,050 |
| 보급률 | 55.5% | 54.7% | 52.9% | 52.0% | 51.8% |

자료: IDATE(2007)

3. 무선통신 시장

일본의 무선통신시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침체기에 빠졌고, 2005년부터 2006년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2% 증가한 6백2십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선통신서비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 요금 하락을 상쇄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이에 무선통신 사업자의 ARPU가 크게 하락했다.

2007년 6월 현재,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총 9천8백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NTT DoCoMo가 시장을 주도하고, KDDI와 Softbank가 나머지 시장을 분점하고 있다. 2007년 6월 기준, NTT DoCoMo의 가입자 수는 5천3백만, KDDI 2천9백만, Softbank(2006년 3월 Vodafone KK 인수)의 가입자 수는 1천6백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KDDI는 다른 두 사업자와 다르게 CDMA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무선통신 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반기) |
|------------------------------|--------|--------|--------|--------|----------|
| NTT DoCoMo | 45,366 | 47,914 | 50,366 | 52,213 | 52,846 |
| KDDI | 19,647 | 22,359 | 24,695 | 27,225 | 28,710 |
| Softbank Mobile/ Vodafone | 14,774 | 15,211 | 15,117 | 15,496 | 16,440 |
| eAccess | - | - | - | - | 60 |
| 합 계 | 79,787 | 85,484 | 90,178 | 94,936 | 98,056 |
| 보급률 | 62.7% | 67.1% | 70.8% | 74.5% | 76.9% |
| 3G 가입자 수 | 1,993 | 10,898 | 29,197 | 50,597 | 62,824 |

자료: IDATE(2007)

일본의 3G 가입자 수는 2003년 2백만 명에서 2006년 5천만 명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3G 모바일 가입자수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중 NTT DoCoMo가 2007

년 9월 기준 가입자 수 4천만 명으로 3G시장의 76%를 점유하고 있다. 향후 일본 무선통신시장의 성장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2011년으로 계획) 때 발생될 여분의 주파수 분할방식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인터넷 시장

일본에서 구축된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의 종류는 DSL, 케이블모뎀, FTTx 등으로 나누어지며, 전체 이용자 수는(2007년 6월 기준) 2천 7백만 명을 넘어섰다.¹⁾ NTT는 FTTx 시장의 70%를 차지하며 전체 인터넷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Yahoo! BB(19%), eAccess(7%), KDDI(7%)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표 5〉 인터넷 기술종류별 가입자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반기) |
|-----------|--------|--------|--------|--------|----------|
| DSL | 10,272 | 13,325 | 14,480 | 14,240 | 13,771 |
| 케이블 모뎀 | 2,500 | 2,870 | 3,350 | 3,567 | 3,827 |
| 기타 (FTTx) | 849 | 2,437 | 4,648 | 7,951 | 9,662 |
| 합 계 | 13,621 | 18,632 | 22,478 | 25,758 | 27,230 |
| 보급률 | 10.7% | 14.6% | 17.6% | 20.2% | 21.4% |

자료: IDATE(2007)

2007년 6월 기준, DSL 기술이 우세한 가운데 FTTx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²⁾ FTTx는 일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시장점유율이 2005년 말 20%에서 2007년 6월 말에 35%까지 증가하였다. NTT는 FTTx 가입자 수가 2010년까지 3천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Cable 시장은 300개의 업체가 경쟁중이며, J-Com, Japan Cable Net, TOKAI and Chubu Cable이 주요 사업자로 경쟁하고 있다.

1) IDATE(2007)

2) DSL이 지배적(시장점유율 51%)이나, DSL 회선 점유율은 2005년 말 이후 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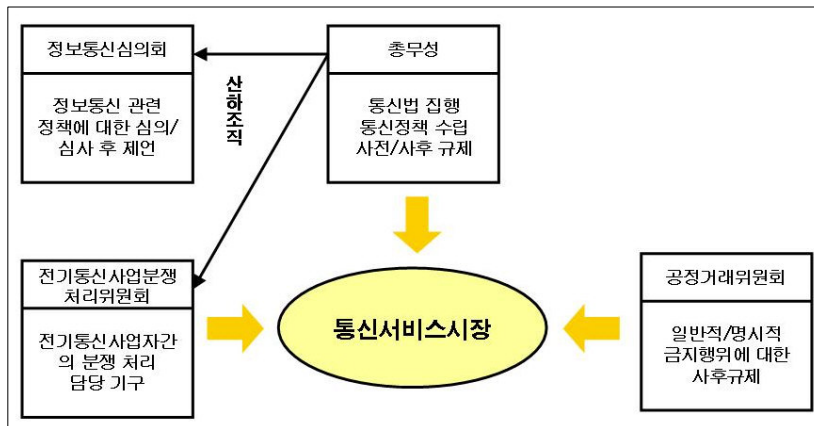
Ⅲ. 일본의 통신규제 현황

1. 통신규제기관 및 법규현황

가. 통신규제기관

2001년 중앙성청 재편으로 출범한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은 정보통신, 우정산업 등을 포함한 인프라 관련 제도 및 국민경제와 사회활동을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관장하는 조직으로, 기존에 우정성에서 담당하여 오던 통신관련 전반적인 규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일본은 총무성 내에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 그리고 지방부국인 종합통신국을 두어 면허, 주파수, 번호사용, 법률, 정책, 중재, 가격책정, 민영화 등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신 관련 자문기구로서 정보통신심의회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자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가 존재한다. 한편, 내각총리대신 소속으로 내각부(內閣部) 외국(外局) 형태로 설치된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는 전기통신사업분야에 대한 일반경쟁규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통신규제기관과 통신산업에서의 반경쟁 행위 및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대하여 총무성과 공동으로 규제권한을 가진다.

[그림 1] 일본의 통신 규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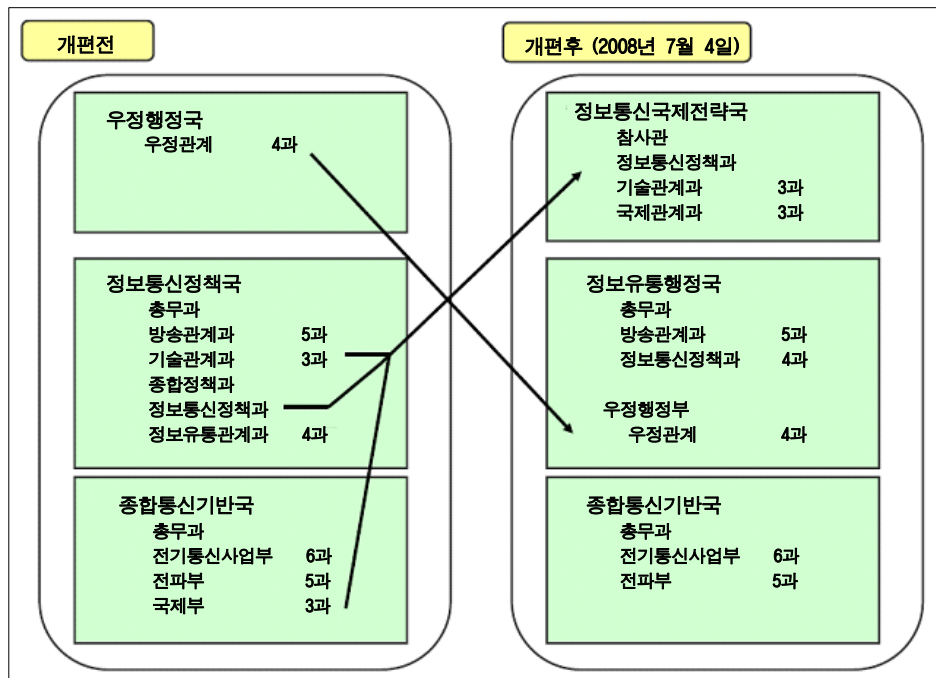


자료: 김낙순(2005)

지난 7월 4일, 일본은 총무성의 기구 개혁을 통해 기존의 정보통신 관련국을 정보통신정책국, 종합통신기반국 등 2국제에서 정보통신국제전략국, 정보유통행정국, 종합통신기반국 등 3

국제로 개편하였다. 기존에 정보통신정책국에 속해 있던 종합정책과, 정보통신정책과, 기술정책과 등과 종합통신기반국의 국제부가 이관되어 신설된 정보통신국제전략국은 ICT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국제전략국은 정보통신관련 종합정책을 다루고, 기술정책 및 국제정책을 담당한다. 종합통신기반국은 통신정책과 전파정책을 주로 담당하며, 정보유통행정국은 방송정책, ICT 이용활용정책, 우정정책 등을 맡고 있다.

(그림 2) 총무성 조직개편 후 정보통신관련 부서 체제도



자료: 일본, 총무성(2008)

<표 6> 일본 총무성 내국 및 산하조직의 통신규제 역할

| 규제 기관 | 역 할 |
|-----------|------------------------------------------------------------------------------------------------------------------------------------------------------------------------------------------------------------------------|
| 정보통신국제전략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정책: 정보통신의 종합정책 기획 및 수립, 통신 및 방송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인터넷 국제전략 등 ○ 기술정책: 기술개발, 우주개발, 표준화 활동 등 ○ 국제정책: 국제관계 업무 총괄, 국제협력 정책 기획 및 입안, ODA 등 협동 프로젝트 전개 등 |

| 규제 기관 | 역 할 |
|------------------------|-------------------------------------------------------------------------------------------------------------------------------------------------------------------------------------------------------------------------------------------------------|
| 종합통신기반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정책: 유무선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용 규율, 전기통신업의 발달·개선 및 조정, 경쟁환경 정비, 차세대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 전과정책: 주파수 할당 및 전파의 감독·관리, 전파 이용촉진 등 |
| 정보유통행정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정책: 방송관련 유무선 시설 설치 및 사용 규율, 유무선 시설 정비, 방송업의 발달·개선 및 조정, 국제방송 강화, 디지털화, CATV 보급촉진 등 ○ ICT 이용활용정책: 콘텐츠 유통 촉진, 지역정보화 촉진 등 ○ 우정정책: 우편사업 추진 및 감독, 우편·서신편의 경쟁 촉진, 우편국 네트워크의 활용 촉진 등 |
| 종합통신국 (총무성의 지방지분부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11곳에 설치됨 ○ 전기통신사업의 인허가, 정보통신 지역 진흥, 무선국, 전기통신사업 및 방송사업 면허·검사, CATV 등의 허가·감독, 전파의 감사, 전파이용료 관련 사무 등의 역할 담당 |
| 정보통신심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정보의 전자적 유통 및 전파의 이용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 심사·심의하여 의견 제언, 전기통신사업법등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사항을 심사·심의 ○ 총무대신이 임명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 2년) |
| 전과감리심의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와 방송의 규율에 관해 조사·심의, 총무대신에게 권고,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의·의결 등의 업무 수행 ○ 총무대신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 (임기 3년) |
| 전기통신사업 분쟁처리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여 공정경쟁의 실현과 분쟁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설치 ○ 사업자로부터 신청 받아 분쟁에 대한 알선·조정 수행 사업자간 분쟁 및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분쟁, 전기통신업무·업무에 관한 고충 관련 신청 사항을 총무대신의 요청을 받아 심의·심사 후 총무대신에게 답신 또는 권고의 형태로 회답 |

나. 통신사업관련 법규현황

1) 전기통신사업법(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 昭和59 法律第86号)³⁾

‘전기통신사업법’은 1985년 4월, 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을 적정하고 합리적이게 만들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시장의 전 분야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시행되었다. 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진입 및 퇴출, 전기통신설비, 토지 사용 등에 관한 규율을 정하고 있다.

3) 일본은 현재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는 현행 9개 관련법을 ‘정보통신법(가칭)’으로 일원화 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다. 2011년 시행을 목표로 현재 정보통신법의 주요 골격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 7〉 전기통신사업법 구성 및 주요 내용

| 항목 | 내 용 |
|--------|----------------------------------------------------------------------------------------------------------------------------------------------------------------------------------------------------------------------------------------------------------------------------------------------------------------------------------------------------------------------------------------------------------------------------------------------------------------------------------------------------------------------------------------------------------------|
| 목적 | 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이익 보호, 전기통신의 건전한 발달 및 국민편리의 확보를 도모하여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 |
|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열 금지, 통신의 비밀 보호 등 제2장 전기통신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의 공평, 기초적전기통신서비스, 중요통신의 확보 • 사업의 등록 및 신고 • 계약약관, 요금, 서비스의 제공의무, 업무개선명령 •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공용, 사전전기통신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단말설비의 기술기준 • 지정시험기관, 등록인정기관, 기초적 전기통신서비스 지원기관 제3장 토지의 사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인정, 토지의 사용(공익사업특권) 제4장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조직, 알선 및 중재 제5장 잡칙 제6장 벌칙 |
| 관계 정성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규칙 • 전기통신사업 회계 규칙 •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접속 회계 규칙 • 접속료 규칙 • 기초적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교부금 및 부담금 산정 등 규칙 • 전기통신사업 보고 규칙 • 전기통신 주임기술자 규칙 • 공사담임자 규칙 • 단말기기의 기술 기준 적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 전기통신번호 규칙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규칙 • 단말설비 등 규칙 •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정하는 지정 기관을 지정하는 성령 |

자료: 일본, 통신·방송법제에 관해(2006)

2) 전파법(電波法, 昭和25法律第131号)

‘전파법’은 1950년, 전파의 공평하고 능률적인 이용을 확보하여 공공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되었다. 전파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무선설비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따라야 하는 무선국 면허, 무선설비, 무선중사자, 무선국 운용 등에 관한 규율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 전기통신과 관련된 법으로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NTT) 등에 의한 적절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고, 전기통신 기반 기술에 관한 연구내용을 담고 있는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 昭和59年12月25日法律第85号(이하 NTT 법))’ 등이 있으며, 하위 법 개념의 명령·규칙 등이 존재한다.

2. 시장진입규제

가. 서비스 분류

기존의 일본 전기통신서비스는 7개의 제1종 전기통신서비스, 4개의 제2종 전기통신서비스로 분류⁴⁾ 되었으나, 1998년 3월 이후 제1종, 제2종 서비스 구분이 폐지되고, 음성전송, 데이터 전송, 전용 등 3개의 서비스로 간소화되어 분류되었다. 더 나아가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종 및 제2종 사업 구분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명시적으로 서비스 구분 자체를 없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하기 위하여 기초적 전기통신서비스, 지정전기통신서비스, 특정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보편적 서비스, 상호접속, 요금규제 등 관련성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⁵⁾

기초적 전기통신서비스(基礎的電気通信役務)란 국민 생활에 불가결하기 때문에 널리 일본 전국에서 제공이 확보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가입전화, 공중전화, 위급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적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적격전기통신사업자(適格電気通信事業者)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요금 및 기타 제공조건에 관해 계약 약관을 작성·신고하고, 해당 약관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지정전기통신서비스(指定電気通信役務)는 제1종 지정설비, 즉 NTT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이다. 음성전송, ISDN, 전송역무 등이 지정전기통신서비스에 해당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의 요금 및 기타 제공 조건에 관한 보장 계약약관의 작성·신고 의무를 가지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특정전기통신역무(特定電気通信役務)는 지정 전기통신 서비스 중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역무별 기준요금지수를 넘는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는 가격상한규제(Price Cap)를 적용하고 있다.⁶⁾

4) 제1종 서비스: 전화, 전용, 전보, 전신, 데이터, 디지털데이터, 무선폭출

제2종 서비스: 음성, 화상, 데이터, 복합

5)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표 8〉 규제를 위한 서비스 구분

| 역무 구분 | 내 용 | |
|--------------|---------------------------------------------------------------------------------------------------------------------------------------------------------------------------------------------------------------------------------------------------------------------------------------------------------------------------|-------------------------------------------------------------------------------------------------------------------------------------------------------------------------------------------------------------------------------------------------------------------------|
| 기초적 전기통신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활에 불가결하기 때문에 널리 일본 전국에 있어서의 제공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하여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서비스(사업법 제7조) • 보편적 서비스를 정의함 | |
| 지정 전기통신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지정전기통신 설비(사업법 제33조 2항)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로서, 타 사업자가 대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로, 해당 설비를 설치한 사업자가 본 설비를 이용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기타 제공 조건 등의 적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특별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무성령으로 정한 서비스(사업법 제20조 1항) • 상호접속의 단위가 됨 | |
| | 제1종 지정전기통신 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계) 각 도(都), 도(道), 부(府), 현(縣)마다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가입자회선을 보유하는 불가피한 설비로 지정된, 가입자회선 및 이와 일체로 설치되는 고정통신용 전기통신설비(사업법 제33조 1항, 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3) • 가입자회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NTT동·서가 이에 해당 |
| | 제2종 지정전기통신 설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계) 전기통신설비 중, 업무구역마다, 점유율이 25%를 초과하는 이동 단말설비를 가지고 있는, 불가피하지는 않으나 이동통신시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가입자를 수용하고 있는, 기지국회선 및 이동통신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사업법 제34조 1항, 시행규칙 제23호 제9항 2) • 현재 NTT DoCoMo, KDDI, 오키나와 셀룰러가 이에 해당 |
| 특정 전기통신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 전기통신 서비스 중, 이용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사업법 제21조) • 요금규제(Price cap)의 대상 | |

자료: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박동욱 외(2007) 등 재정리

또한, 행정집행의 편리를 위해 사업 등록 신청서 또는 신고서 첨부서류 양식 등에 전기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27개의 통신서비스가 세부 구분되어 나열되어 있다.

6) 박동욱 외(2007)

〈표 9〉 등록신청서 등에 따른 세부 서비스 구분

| | | |
|----------------|--------------------|---------------------|
| 1. 가입전화 | 11. FTTH 접속 서비스 | 19. 공중 무선LAN 접속 서비스 |
| 2. 종합디지털통신서비스 | 12. DSL 접속 서비스 | 20. BWA 접속 서비스 |
| 3. 중계전화 | 13. FWA 접속 서비스 | 21. IP-VPN 서비스 |
| 4. 국제전화 등 | 14. CATV 접속 서비스 | 22. 광역 이서네트 서비스 |
| 5. 공중전화 | 15. 휴대전화·PHS 단말기 | 23. 전용역무 |
| 6. 휴대전화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24. 부가가치 서비스 |
| 7. PHS | 16. 휴대전화·PHS 퍼켓 통신 | 25. 인터넷 관련 서비스 |
| 8. IP전화 | 접속 서비스 | 26. 전보 |
| 9. FMC 서비스 | 17. 프레임일레이 서비스 | 27. 상기 이외 서비스 |
| 10. 인터넷 접속 서비스 | 18. ATM 교환 서비스 | |

자료: 일본 전기통신사업 신고서 양식(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 様式第4)

나. 허가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 전기통신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선설비를 자체적으로 보유하였는지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전기통신사업으로 구분되었고, 이에 따른 규제수준도 결정되었다. 자체 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장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필요로 하였으며, 망 및 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등록 또는 신고⁷⁾를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인해 전기통신 서비스의 제공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더 이상 자체 회선설비 보유 여부로는 사업구분의 기준이 되기가 어려워 졌고, 동일한 서비스 시장에서도 사업구분의 경계를 넘어선 경쟁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⁸⁾

이에 일본은 2004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1종 및 제2종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설비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제도를 변경하였다. 즉, 대규모 회선설비⁹⁾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사업법 제9조), 그 외 소규모 회선설비¹⁰⁾를 설치하

7)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과 일반으로 구분한다. 공전공 접속 또는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제2종사업자는 총무성에 등록해야하며, 그 외의 일반 제2종 사업자는 신고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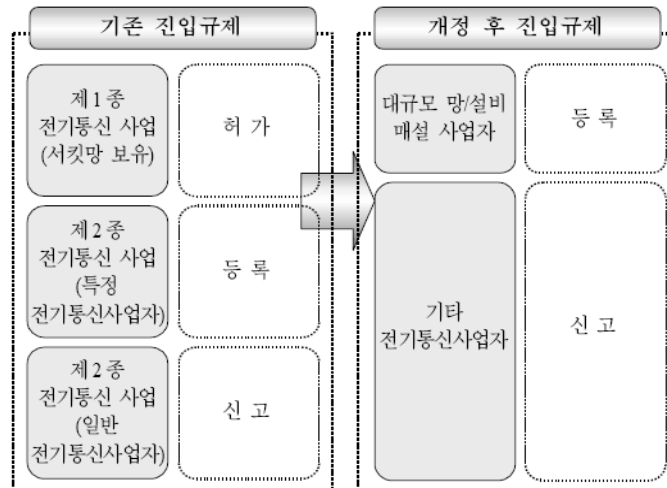
8) 오승한(2006)

9) 단말계 전송로 설비(端末系伝送路設備, 단말설비 또는 자영 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는 전송로 설비)를 2개 이상의 시, 읍, 면에 설치하거나, 중계계 전송로 설비(中継系伝送路設備, 단말계 전송로설비 외의 전송로 설비)를 2개 이상의 도, 도, 부, 현에 설치하는 경우

10) 단말계 전송로 설비를 1개 시, 읍, 면에 설치하거나, 중계계 전송로 설비를 1개 도, 도, 부, 현

거나 회선설비가 필요치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신고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되었다(사업법 제16조).

(그림 3) 일본 통신서비스 시장 진입제도의 변경



자료: 박동욱 외(2006)

<표 10>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 | |
|--------|-------------------------------------------------------------------------------------------------------------------------------------------------------------------------------------------------------------------------------------------------------------------------------------------|
| 수속명 | 전기통신사업 등록 신청 |
| 법률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 수속 대상자 |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자 |
| 수수료 | 15만엔 (등록면허세법 별표 제1 47의 2) |
| 심사기준 | (전기통신 사업법 관계 심사 기준 제5조) 제5조 등록은 법 제10조 제1항의 신청서 및 동조 제2항의 첨부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심사하여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시한다. (1) 신청자가 다음의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경우이며, 해당 사업의 개시가 전기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등 전기 통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경우 가. 전주 및 기타 설비이며, 타 사업자가 사업전개를 도모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불가결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

내에 설치하는 경우

초 점

| | |
|---------|-----------------------------------------------------------------------------------------------------------------------------------------------------------------------------------------------------------------------------------------------------------------------------------------------------------------------------------------------------------------------------------------------------------------------------------------------------------------------------------------------------------------------------------------------------------------|
| 심사기준 | <p>나. 타 분야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한 자</p> <p>다. 전파법 제27조의 13 제4항의 인정을 받은 자며, 해당 인정과 관련되는 개설 계획에 의해 타 사업자의 무선설비이용 촉진을 계획을 보유한 자</p> <p>(2) 전호 외, 해당 사업의 개시가 이용자의 이익의 확보에 반하지 않는 등 법의 목적에 비추어 전기 통신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적절한 경우</p> |
| 평균 처리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중한 심사를 요하는 경우: 1~2개월 • 상기 이외의 경우: 15일 |
| 제출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 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서류: 사업 개요 - 신청자 종류 별 추가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 법인: 정관 또는 기부 행위의 등본; 등기부의 등본; 임원 명부 및 이력서 2) 신 법인 설립: 정관 또는 기부 행위의 등본; 발기인, 사원 또는 설립자의 명부 및 이력서;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증명 서류 3)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5호 이외의 단체: 정관, 규약 등 해당 단체의 목적, 조직, 운영 등을 명시하는 서류의 등본; 임원 명부 및 이력서;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증명 서류 4) 개인: 이력서 및 이름, 주소 및 생년월일 증명 서류 |
| 담당 부서 | 총무성 종합통신기반국 전기통신사업부 사업정책과 |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표 11〉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 | |
|---------|-----------------------------------------------------------------------------------------------------------------------------------------------------------------------------------------------------------------------------------------------------------------------------------------------------------------------------------------------------------------------------------------|
| 수속명 | 전기통신사업의 신고 |
| 법률근거 | <p>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제1항</p> <p>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p> |
| 수속 대상자 |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등록 대상자 제외) |
| 수수료 | 없음 |
| 심사기준 | - |
| 평균 처리기간 | - |
| 제출 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업 신고서 • 네트워크도 •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또는 기부행위 및 등기부의 등본 - 정관 또는 기부행위의 등본 - 발기인, 사원, 또는 설립자의 명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증명 서류 - 정관, 규약 등 해당 단체의 목적, 조직, 운영 등을 명시하는 서류 등본 - 임원 명부 및 이름, 주소, 생년월일 증명 서류 등 |
| 담당 부서 | 각 종합통신국 전기통신부 전기통신사업과 및 오키나와 종합통신사무소 정보통신과 |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기준에 제1종 사업자에게 부여된 관료권은 허가제 폐지와 함께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의 인정 절차를 통하여 부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 중, 광섬유케이블 등을 설치할 때 타인의 토지사용 및 공공시설의 우선적 사용 등을 희망하는 자는 총무대신의 인정을 통해 해당 사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료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사업법 제117조~제143장).

한편, 전기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무선국을 개설¹¹⁾해야 하는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 관련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 종류에 따라 개별 면허 또는 포괄(class)면허를 신청해야 하나, 아래와 같이 등록만으로 또는 등록이나 면허 취득이 필요없이 자유로이 무선국 개설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표 12〉 일본 무선국 개설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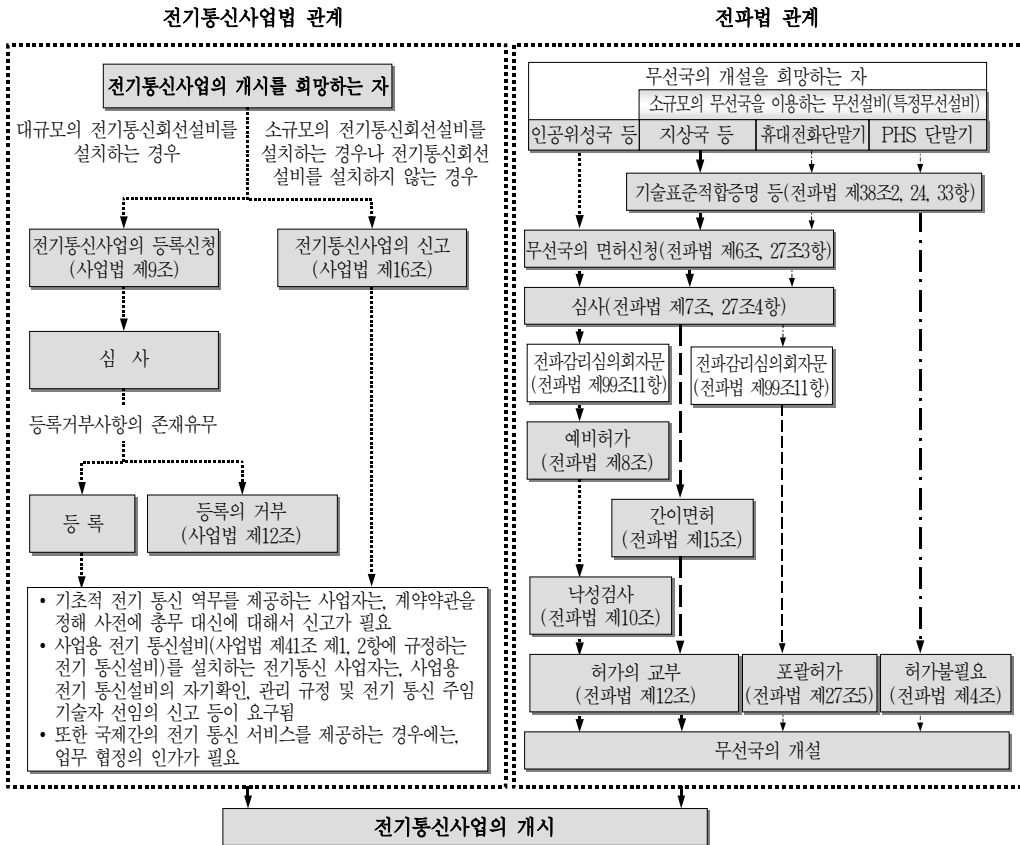
| 진입 규제 | | 대 상 |
|-------------|--------------|--------------------------------------------------------------------------------------------------------------------------------------------------------------------------------------------------------------------------------------|
| 면허 | 개별 면허 | - 등록 대상: 개개의 무선국으로서 감리가 필요한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 • TV/라디오 방송국, 이동전화기지국, 인공위성, 항공기국 등 - 절차: 신청 → 심사 → 예비면허 → 검사 → 면허 교부 |
| | 포괄(Class) 면허 | - 등록 대상: 동일 타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감리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는 경우 • 이동전화단말기, 공동이용 업무무선, VSAT지구국 등 |
| 등록 | 개별등록 | - 등록 대상: • 5GHz대 무선 접속시스템의 기지국, 육상이동중계국, 육상이동국 • 안테나 전력이 10mW 이하인 PHS 기지국 • 주파수 호핑(hopping)방식이 2.4GHz대 구내 무선국 • 950MHz대 구내 무선국 ※ 주요 요건: 혼신방지 메커니즘 보유; 적합표지 무선설비만을 사용; 지정 구역 내 설비 - 절차: 신청 → 심사 → 등록(소요기간: 약 0.5개월) |
| | 포괄등록 | - 등록 대상: 개별등록 대상 중 정해진 구역내에 같은 규격의 무선설비를 2개 이상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 절차: 신청 → 심사 → 등록 → 개설 → 신고(소요기간: 등록 후 15일 이내) |
| Free Regime | | - 등록 대상: 고전력 무선국 및 미약전파 무선국 등 |

자료: 일본 총무성, 정보통신사업진입 매뉴얼(2006), 박동욱 외(2006) 재정리

전기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수속을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11) 무선국의 개설이란 무선설비를 설치하여 이를 조작할 자가 전파를 발사할 수 있는 상태로 무선국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 일본의 통신사업 진입절차 개요¹²⁾



자료: 일본 총무성, 전기통신사업진입 매뉴얼, 최계영 외(2007) 재정리

다. 외국인 투자 관련

1998년 2월 WTO 기본통신협정이 발효되고 1998년 7월 KDD 회사법이 폐지됨에 따라 NTT를 제외한 일본의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폐지되었다.¹³⁾ NTT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외국인¹⁴⁾의 경우 NTT 지주회사에게만 투자 할 수 있도

12) 전파법 관계수속은 무선통신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관료권 인정과 관련한 수속은 (그림 7) 참조

13) 이전 일본은 NTT 및 KDD에 대한 직, 간접 외국인 지분참여를 20%로 제한하였다.

14) 여기서 외국인이란, 1) 일본 국적이 아닌 자, 2)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3) 외국 법인 또는 단체, 4) 전술한 자가 직접적으로 차지하는 의결권의 비율이 총무성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NTT법 제6조).

록 하였고, 총 외국인 의결권 지분제한을 최대 33.3%까지로 설정하였다(NTT 법 제6조). 이와 더불어, 외국인의 경우 NTT지주회사 또는 지역회사의 이사 및 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여(NTT 법 제10조) 지배력에 근거하여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간접적인 제한을 두고 있다.

3. 기타 주요 규제정책

가. 공정경쟁¹⁵⁾

일본은 2001년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62호)’을 통하여 시장 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¹⁶⁾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러한 사업자에 대하여 일반전기통신사업자와는 비대칭적으로 규제를 하는 제도를 도입¹⁷⁾하는 등, 공정경쟁촉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동시에 비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약관, 설비 접속,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보다 유연한 사업전개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NTT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법률 제125호)’을 통하여 제1종 전기 통신사업 및 제2종 전기 통신사업의 구분을 폐지함과 동시에, 제1종 전기 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변경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요금 및 계약 약관의 신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며,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의 다양한 사업전개, 전기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한 요금의 저렴화, 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 등을 재촉하고자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사업법 제

15) 일본 총무성(2008),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의 촉진에 관한 지침

16)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시장지배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총무성은 ‘전기통신사업분야의 경쟁확보 관련 지침’에서 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 중 총무대신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전기통신사업자라고 밝히고 있다.

17) 유선부문은 각 현에서 유선 가입자회선이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사업자의 설비는 ‘1종 지정설비’로 분류되고 해당 사업자는 상호접속, 요금 및 공정경쟁 관련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통신사업법 제33조)

- 제1종 지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자(NTT동서)에 대한 서비스 계약약관 작성·신고, 접속약관 허가, 언번들링, 접속회계 정리·공표를 의무화함

- 이동 서비스의 경우, 각 현의 가입자의 25%의 시장점유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설비를 2종 지정설비로 구분하고, 위와 마찬가지로 좀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됨(제30조 1항)

30조 제3항)하고 있으며, 이를 행할 경우 행위의 정지·변경 명령이 발동되고(사업법 제30조 제4항 및 제31조 제3항), 공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의 등록 및 인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126조 제1항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 (1) 접속 업무를 통해 얻게 된 타 사업자의 정보를 해당 업무용 목적 외로 활용 및 제공하는 행위(사업법 제30조 제3항 제1호)
- (2) 전기통신업무 관련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우선적인 취급·이익을 부여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취급·불이익을 부여하는 행위(사업법 제30조 제3항 제2호)
- (3) 타 전기통신사업자,¹⁸⁾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판매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규율·간섭하는 행위(사업법 제30조 제3항 제3호)
- (4) 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 중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통신사업자가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보수, 토지·건물 등의 이용 또는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관계사업자에게 비해서 타 전기통신사업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사업법 제31조 제2항 제1호)
- (5) 시장지배적 전기통신사업자 중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기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의 업무의 수탁에 대해서, 특정관계사업자에게 비해서 타 전기통신사업자를 불리하게 취급하는 행위(사업법 제31조 제2항 제2호)

이와 더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내부 상호보조의 억제·감시 및 업무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정리 및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상황 등의 회계정보 공표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사업법 제30조 제5항).

〈표 13〉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

| 대상자 | 제1종지정전기통신설비(유선계) |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이동계) |
|--------|-----------------------------------------------------------|-----------------------------------------------------|
| 지정요건 | 고정단말계전송로 설비수의 점유율이 50%를 초과(각 도시마다) 〈설비지정〉 (제33조제2항) | 이동단말 설비수의 점유율이 25%를 초과(업무구역) 〈설비지정〉 (제30조제1항) |
| 서비스 규제 | 지정전기통신업무: 보장계약약관 (특정전기통신업무: 가격상한제) | |

18) 콘텐츠 제공자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164조 제1항 각 호로 내거는 전기통신사업(이른바 적용 제외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 대상자 | 제1종지정전기통신설비(유선계) |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이동계) |
|------------|--------------------------------------------------------------------------------------------------------------------------------------------------------------------------------------------------------------------------------------------------------------------------------------------------------------------------------------------------------------------------------------------------------|--------------------------------------------------------------|
| 접속관련 규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약관은 허가 - 접속료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법정요건이 정해짐 - 접속회계의 정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속약관의 신고 |
| 행위규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속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2. 전기통신업무에 있어서 특정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부당하게 우선적으로 처리/이익제공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처리/불이익을 주는 행위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콘텐츠 제공자를 포함), 전기통신설비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의 업무에 대해 부당한 법률/간섭 4.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수치상황 등의 회계정보의 공표업무(제30조제3항) 위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사업자는 지정요건 외에 수익점유율이 24%를 초과(업무구역)〈사업자지정〉하고 그 점유율의 추이와 그 외 사정을 고려하여 준수 의무가 부과됨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관계사업자간의 임원겸임의 금지 2. 이하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관계사업자에 비해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부당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의 금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제1종지정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보수, 토지/건물 등의 이용 또는 정보의 제공 b.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그 외 업무의 수탁 상기 2의 준수를 위해서 강구한 조치 및 실시상황을 매년 보고(제31조, 제31조 제2항) | |

자료: 박동욱 외(2007)

나. 상호접속

일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제33조, 제35조에 따라 비차별적인 조건하에 효율에 기초한 상호접속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상호접속에 대한 규제는 제1종 지정 전기통신설비 보유 사업자와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 보유 사업자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필수설비에 관한 규제를 제외한 기타 비지배적사업자를 위한 상호접속 협의사전 통보와 같은 상호접속 규제는 철폐되었다.

총무성은 현재 유선부분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NTT의 상호접속요율은 원가기반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총무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호접속 요율은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¹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유선부분의 지배적 사업자인 NTT 동·서)의 경우, 접속료 및 접속조건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는 접속 약관을 작성하여 총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사업법 제33조 제2항), 인가 받은 접속약관을 공표하고(사업법 제33조 제10항), 통신량 및 접속회계 등을 정리·공표(사업법 제12, 13항), 언변들링(설비를 가입자회선, 가입자 교환기 등으로 세분화), 특정 기능에 관한 접속료에 대한 LRIC 방식에 의한 산정 등의 의무를 지닌다. 제2종 지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이동통신부분의 지배적 사업자인 NTT DoCoMo, 오키나와 셀룰러, KDDI)의 경우, 접속약관을 작성하여 총무대신에게 신고하고(제34조 2항), 신고한 접속 약관을 공표(사업법 제5항)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제1종 지정전기통신설비 보유 사업자의 경우, 상호접속요율은 원가를 기반으로 산정²⁰⁾하여야 하나(사업법 제33조 제4항), 제2종 지정전기통신설비 보유 사업자의 경우, 접속료가 사업자간 협의에 따라 원가에 적정한 이윤을 더한 것이면 된다(사업법 제34조 제3항).

<표 14> 일본의 상호접속요율 결정 절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NTT 동·서: 매년 연말까지 원가 및 트래픽양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한 상호접속약관 초안 제출2. 총무성: LRIC(장기증분원가) 모형에 의해 NTT 동·서의 접속료 검토3. 총무성: 사업자의 통신사업법 규정 적용여부 확인 후 상호접속약관 승인4. 매년 4월 1일부터 신규접속료 적용 <p>※ NTT 동·서는 상호접속 조건, 상호접속요율 등 변경 시, 총무성의 승인 획득 필요</p> |
|------------------------------------------------------------------------------------------------------------------------------------------------------------------------------------------------------------------------------------------------------------------------------------------------------|

자료: 정 훈 외(2007) 재정리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타 사업자로부터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접속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사업법 제32조). 상호접속과 관련하여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자간 정해진 규칙 및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으며,²¹⁾ 만일 사업자간에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는데 실패할 경우, 총무성에 재정을 신청하거나(사업법 제35조),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사업법 제155조)할 수 있다.

다. 보편적 서비스

기초적 전기통신역무란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적절한 조건하에

19) 정 훈 외(2007)

20) 유선통신의 상호접속요율은 1998년 이후 원가기반으로 결정되어 왔다. 초기 2년간은 실제원가(Actual Cost)를 기반으로 결정되었으며, 이후 LRIC(장기증분원가)를 기반으로 결정되었다.

21) 박동욱 외(2006)

서 전국적으로 널리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총무성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일본은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하여 기초적 전기통신역무²²⁾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적절하고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공의 의무를 명시(사업법 제7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일부 개정에 의해 2002년 6월 보편적 서비스가 일본 전국에 널리 적절하고,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도입되었다. 총무성은 또한, 2004년 11월 '보편적 서비스기금 제도의 본연의 자세'를 정보통신심의회에 자문, 보편적서비스의 범위, 보전액 산정 및 거출의 본연의 자세 등에 대하여 검토 수행하였으며, 2005년 10월에 정보통신심의회로부터 답신²³⁾을 받아, 이 답신을 근거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2006년도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입자 선로 등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사업자가 분담하도록 보편적 서비스 손실 분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종래 보편적 서비스 제공 확보는 NTT동·서의 법률상의 책무로 여겨져, 저비용 지역으로부터의 흑자로 고비용 지역의 적자분을 NTT동·서에서 내부적으로 상호보조를 하여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휴대 전화 및 IP전화의 보급, 전화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진전 등으로 인해, NTT 부담만으로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우려가 생겼다. 이에 이용자에게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NTT동·서를 포함 유선전화, 휴대전화, PHS, IP전화 등 약 50여 개사가 비용을 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NTT 동·서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설비와 접속 등에 의해 이익을 얻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사업 수익이 10억엔 이상인 전기통신사업자, 총무대신으로부터 전기통신번호를 지정받고, 그 번호를 최종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사업자가 본 보편적서비스 제공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수를 비례한 금액을,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전기통신사업자협회를 통해 NTT동·서에게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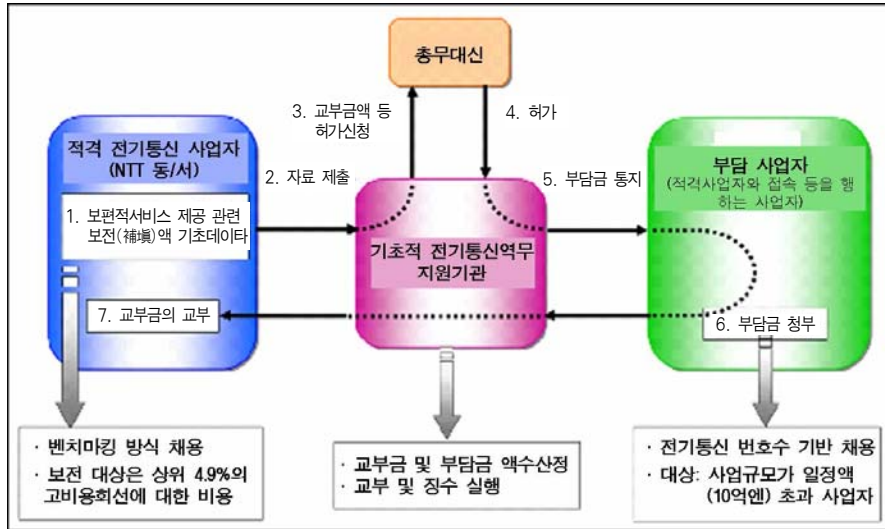
전화 회사의 전화 번호 한 개당의 지불액(번호 단가)은 기초적 전기통신역무 지원기관이 관계규정에 근거하여 NTT 동·서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보전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22) NTT동·서가 제공하고 있는 가입전화, 공중전화, 비상전화(110번, 118번, 119번) 서비스 등

23) '보편적 서비스 기금제도의 본연의 자세'

- 벤치마킹 대상 채용
- 전기통신번호수 기반 거출

(그림 5)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흐름



자료: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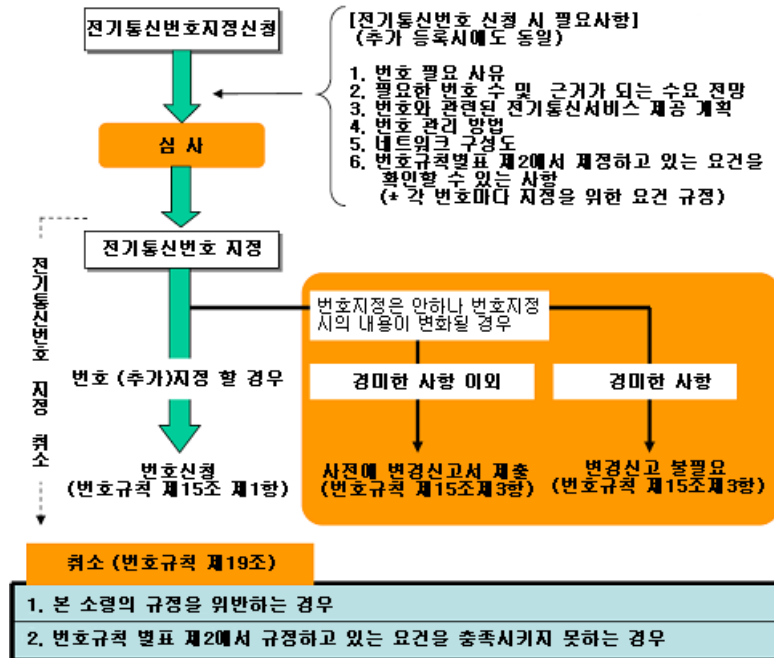
라. 희소자원의 할당 및 이용

1) 번호자원

전기통신 번호를 지정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무대신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기통신번호규칙,²⁴⁾ 제15조). 총무대신은 사업자가 신청한 전기통신번호가 전기통신번호계획에 근거하고 있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서비스 관련 필요한 수의 전기통신번호를 지정하고 번호지정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한다(전기통신번호규칙 제16조). 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증을 교부받기까지는 평균 2개월이 소요된다.

24) 電気通信番号規則(平成9年12月17日 郵政省令第82号)

(그림 6) 전기통신 번호 관련 절차



자료: 일본 총무성(2006), 전기통신사업진입 매뉴얼

2) 주파수²⁵⁾

주파수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은 보수적인 전파관리체제를 보유하고 있어, 무선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경매와 같은 경제적 매커니즘을 활용하지 않고 비교심사제를 통한 사업자 지정 및 정부 주도의 주파수 분배정책 등 정부주도형 주파수 관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주파수 회수 재배치제도 정비를 통한 대역재배치, 경제적 효율성을 유도하는 전파사용료제도, 사업자신고 및 등록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진입제도의 개정 등을 통하여 무선주파수 할당에 있어 시장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주파수 할당절차는 무선국 개설 허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파수 할당절차는 ITU 등 국제기구의 주파수 분배 결정을 참고한 국내 주파수 분배, 기술조건에 대한 검토 및 무선국면허방침안의 발표, 사업자 선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전파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정해지는 '주파수 할당계획'은 무선국 면허 허가 시 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파수할당

25) 최계영(2006), 최계영(2007)

계획'에는 할당이 가능한 무선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할당 가능한 주파수마다 무선국의 무선통신 상태, 무선국의 목적, 주파수 사용 기한 및 기타 사용 관련 조건, 주파수의 취지(전파법 제27조 13 제4항 규정 관련일 경우 해당) 등을 기재하고 있다.

〈표 15〉 주파수 할당 절차

| 할당 절차 순서 | | 비 고 |
|----------|------------------------------------------|-----------------------------------------|
| 1 | 주파수 국제분배의 결정 | 일본 제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모집 |
| 2 | 주파수 국내분배의 결정 | 주파수 할당 계획변경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모집 |
| 3 | 기술기준의 설정을 위한 기술적 조건 검토 | 사업자, 이용자 등에 의한 검토 및 의견 청취 |
| 4 | 해당서비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해당서비스 기술기준에 대한 성령 제정 |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할당안 및 성령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모집 |
| 5 | 면허 방침안의 공표 | 면허 방침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 모집 |
| 6 | 무선국 면허신청 접수 및 심사 | 전파법 등에 의한 심사 |
| 7 | 무선국 면허 공표 | |

자료: 최계영 외(2006)

3) 관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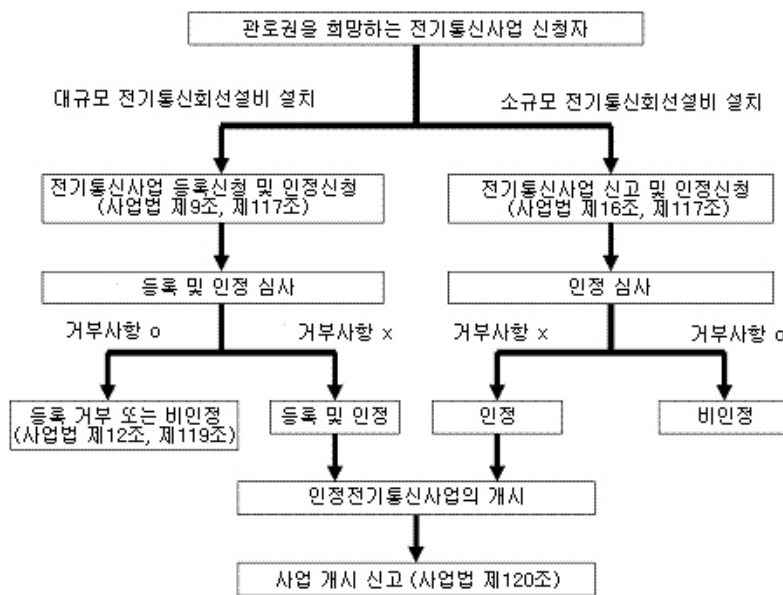
관로권(right of way)²⁶⁾은 기존에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과 일체로 허가를 통해 부여되었으나, 허가제의 폐지로 관로 포설 및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승인절차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었다. 즉, 사업인정 제도가 신설되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 중 관로권을 희망하는 사업자만이 이를 신청하여 승인절차를 거쳐 관로권을 부여받도록 하였다(사업법 제117조, 제128조). 이에 따라 관로권이 필요 없는 사업자(CATV 사업자, 위성사업자 등)는 사업 수행능력 등에 관한 심사가 일체 필요 없어, 규제완화가 큰 폭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로권 승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토지 등의 공공재 사용을 희망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인명칭, 주소 등 기초자료, 전기통신사업의 업무구역, 전기통신사업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개요, 사업 계획서, 이외 총무성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성에 제출하여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총무성은 관로권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자의 1)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 2) 사업계획의 확실성 및 합리성, 3) 신청자의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 변경 등록 또는 신고 등 절차 완료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

26) 관로권이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 공·사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를 '공익사업특권'이라 한다.

(사업법 제119조)하여 관로권을 승인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관로권을 인정받은 사업자(인정 전기통신사업자)는 총무대신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인정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인정 전기통신사업)을 개시해야 한다(사업법 제120조).

(그림 7) 등록·신청과 관로권 인정 절차²⁷⁾



자료: 일본 총무성(2006), 전기통신사업진입 매뉴얼

IV. 결 론

한-일 FTA 협상을 준비하고 향후 한-일간 통신서비스 분야의 교역 확대를 대비하여 일본의 통신서비스 규제제도를 살펴 본 결과 다양한 시장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일본의 통신서비스 분야 규제기관이자 정책기관인 총무성이 독립규제기관(independent regulators)으로서 충분히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책결정과정이 투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²⁸⁾ 특히 지배적 사업자인 NTT의 지분을 일본 정부가 3분의

27) 등록 신청 절차와 관로권 인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해당한다.

28) 일본은 WTO 참조문서(Reference Paper)를 채택하여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WTO 무역정책검토회의 및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 등을 통해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 받고 있다.

1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철폐할 필요가 있다.²⁹⁾ 이로 인해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소유주로서의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나아가 규제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일본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사업자에 대한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가 보장될지가 불확실하다.

둘째, 합리적인 상호접속 요건을 수립 및 접속료 인하가 필요하다. 일본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NTT가 경쟁사에 대해 높은 상호접속 요금과 비합리적인 상호접속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총무성의 상호접속료 규칙 개정안은 접속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기준에서 봤을 때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³⁰⁾ 이에 따라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호접속 요건과 접속료의 추가 인하가 필요하며 이는 특히 기존의 아날로그 네트워크에서 IP기반의 차세대 네트워크(NGN)로 완전히 전환되기 전에 서둘러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배적 사업자, 특히 NTT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경쟁촉진프로그램'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본 통신시장에서 NTT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의 초고속인터넷 시장이 DSL에서 FTTx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FTTx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NTT가 인터넷 시장에까지 지배력을 확산하고, 무선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NTT DoCoMo와 결합상품을 출시하여 그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2007년 10월, 총무성은 IP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며 발생하는 경쟁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경쟁촉진프로그램 2010"³¹⁾을 마련하였는데

29) NTT법 제4조

30) USTR(200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Japan", p.2.

31) 신 경쟁촉진 프로그램 201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비경쟁의 촉진-각 사업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정비 추진
2. 지정전기통신 설비제도 재검토-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정비하여 공정경쟁환경 정비
3. NTT동서 접속료 산정방법 재검토-타사업자에 불가피한 NTT동서의 지역망 접속료 산정 방식을 재검토
4. 이동통신시장 관련 경쟁 촉진-이동통신시장의 신규진입 확보 등을 통한 모바일비즈니스 활성화
5. 요금정산 재검토-요금체계의 복수화, 시장 지배력의 변화 등을 포함한 요금규제(Price Cap) 등을 재검토
6. 보편적서비스 제도 재검토-브로드밴드 시대에 대응하는 보편적 서비스 재검토

동 계획을 서둘러 실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편적서비스 기금 수혜자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수혜 대상 선정과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은 보편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입자 선로 등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사업자가 분담하도록 보편적서비스 손실 분담의무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NTT만이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다.³²⁾ 보편적서비스 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 대상 선정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미국, EU 등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자국내 개방의지에 따라 통신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였지만, 여전히 다양한 시장진입장벽이 존재한다. 향후 일본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일본의 정책과 규제, 비관세장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강하연 외(2007), 『FTA 협상대상국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현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2] 권오상(2003), “일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동향”, 《정보통신정책》 제15권 15호 통권 33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 김낙순(2005), “OECD 주요국 통신시장의 규제체계 및 경쟁상황 평가”.
- [4] 김방룡 외(1999), “일본의 보편적 서비스 확보 방안과 그 시사점”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4권 제1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5] 김창곤(2004), 『정보통신서비스 정책』, jinhan M&B.
- [6] 박동욱 외(2006), 『기간통신사업 분류/허가제도 및 양수합병제도 개선방안』, 정보통신

- 7. 네트워크 중립성 관련 검토-네트워크 IP화에 대응한 정책고가제 정비 및 채용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성 검토
- 8. 분쟁처리기능의 강화-사후규제형 행정으로의 이행, 시장의 브로드밴드화를 따르는 분쟁처리기능의 재검토
- 9. 시장퇴출 규제의 재검토-사업자의 시장퇴출 등에 대응한 제도(채권보전제도) 등 정비
- 10. 경쟁 법의 투명성 확보 등-통신경쟁정책 포털사이트 개설 등, 프로그램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2) 일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적격통신사업자’만이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수혜할 수 있게 하고 있다(사업법 제108조).

정책연구원.

- [7] 박동욱 외(2007),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수탁연구 07-5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8] 오승한(2006),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제연구》 2006-16, 한국법제연구원.
- [9] 이원우(2008), 『정보통신법연구 I』, 경인문화사.
- [10] 정 훈(2007), “상호접속료 산정 방식 해외사례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9권 20호 통권 427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1] 최계영 외(2006),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제 분석”, 《KISDI 이슈리포트》 06-0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2] _____(2007), 『주파수 할당제도 및 이용권 확립방안 연구』, KISDI 최종연구개발 결과보고서, 정보통신부.
- [13] 한은영(2008), “일본, “정보통신법”의 주요 골격 초안 마련”, 《정보통신정책》 제20권 10호 통권440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4] IDATE(2008). “The World Telecom Services Market”.
- [15] USTR(2008).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Japan”. 2008. 3.
- [16] _____(2008). “Results of the 2008 Section 1377 Review of Telecommunications Trade Agreements”. 2008.
- [17] WTO(2006). “Trade Policy Review-Report by Japan”, WT/TPR/G/175.
- [18] _____(2007). “Trade Policy Review-JAPAN-Minutes of Meeting-Addendum”, WT/TPR/M/175/Add.1.
- [19] _____(2007). “Trade Policy Review-Report by the Secretariat-Japan-Revision”, WT/TPR/S/175/Rev.1.
- [20]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九年十二月二十五日法律第八十五号).
- [21] 電波法(昭和二十五年五月二日法律第三百一十一号).
- [22] 電気通信番号規則(平成九年十一月十七日郵政省令第八十二号).
- [23]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昭和六十年四月一日郵政省令第二十五号).
- [24] 電気通信事業法施行規則(昭和六十年四月一日郵政省令第二十五号).
- [25] 総務省(2006), 電気通信事業分野における競争状況の評価に関する基本方針 2006~2008.
- [26] _____(2006), 電気通信事業参入マニュアル.

- [27] 総務省(2008), 電気通信事業分野における競争の促進に関する指針.
- [28] _____ (2008), 情報通信行政のあらまし.
- [29] _____ (2007), 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制度の最近の動向について.
- [30] 総務省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
- [31] 総務省 電波利用 홈페이지 <http://www.tele.soumu.go.jp/index.htm>